

청렴소식지



- 2021년 봄호 -

▼ 2021년도 자체감사 기본계획 발표

우리 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확산시켜 광주 미래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도 자체 감사 기본계획을 각 기관 및 학교에 1월 15일 안내했다.

올해 자체감사 계획은 '자율과 책임으로 청렴한 광주교육 구현'을 목표로 ▲교육활동 중심 학교현장 지원감사 ▲감사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략 감사 ▲신뢰받는 광주교육을 지원하는 청렴감사 ▲교육가족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감사에 초점을 맞췄다.

유·초등학교 4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감사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학교 교직원들이 감사반 편성부터 결과에 대한 시정·개선까지 책임행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진정한 학교자치의 완성이 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.

▼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3등급 달성

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1월 26일 발표되었다.

총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우리 시교육청은 4년 연속 3등급을 달성하였다.

우리 시교육청은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영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,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.

▼ 2021년 청렴실천 행사(청렴꽃 피우기) 개최

우리 시교육청은 2월 23일 본청 별관 회의실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'청렴꽃 피우기 행사'를 개최했다.



이날 행사에서 새 학기를 맞아 고위공직자들이 각자 청렴을 다짐한 문구를 포탈에 직접 작성해 공기정화식물화분에 부착했고, 식물을 1년 동안 기르면서 일상생활 속 청렴을 실천하고 생활화할 것을 다짐했다. 장휘국 교육감은 "청렴꽃은 시민에게 친절과 정성을 다할 때만 피는 꽃이다"며 전 직원에게 청렴의지를 강조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.

▼ 익명신고시스템, 귀하의 바른 목소리가 청렴한 세상을 만듭니다.

- ☑ 신고방법: www.kbei.org 접속 / QR 코드 스캔 / 스마트폰 '광주광역시교육청 케이휘슬' 앱 다운로드 후 신고
- ☑ 신고내용: 공급 횡령, 유용, 금품 향응 수수, 알선 청탁, 이권개입, 직권남용, 부당한 예산 집행, 예산 낭비 행위 등

* 독립된 제3자 기관이 접수하여 IP 추적 방지 등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합니다.



청렴소식지



- 2021년 봄호 -

☑️ 외부강의등 신고

▶ '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동행동강령' 제15조의 '외부강의등'이란?

- 공직자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,
- 그 자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
-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·또는 그 밖의 회의에서 한강의·강연·기고 등을 의미
-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

구분	외부강의 등 여부	비고
경직	X	
시험문제 출제 면접심사	X	
온라인 동영상 강의	O	
공청회 간담회 등 회의에서 진행 역할	O	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 아님
연주회 전시회 등에서 연주·공연, 전시	X	
직무와 관련없는 출강 (강의시간 20분이상 30분이상일 때 또는 1회 이상을 지칭하는 경우 등)	X	직무와는 관련이 없어도 자위나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함
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	X	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함
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들어오는 논문심사 등	X	다수인 대상이 아님

▶ 신고 유의사항

-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으로 신고
- ※ 내이스에 외부강의등록 해능이 없는 교직원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신고
-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서도 사례금 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
- 외부강의등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가능
-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, 근무시간·휴직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를 하여야 함. 단,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포함한 경우는 제외
- ※ 한국교육과정평가원, 한국교육학술정보원, 한국직업능력개발원, 국립법안대학원 서울대학교·연원대학교, 광주과학기술원, 국립광주과학관, 대한체육회, 국립대학교병원 등은 신고대상임

※ 기관 간 외부강의등과 내부강의 구분

소속기관	요청기관	외부강의등 여부	신고
국·공·사립 기관(학교)	국·공립 기관(학교)	외부강의등	X
사립 학교(A법인)	사립 학교(B법인)	외부강의등	O
국·공립 기관(학교)	사립 학교(법인)	외부강의등	O
사립 학교(A법인)	사립 학교(A법인)	내부강의	X
소속기관과 요청기관이 동일 법인일 때			

-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는 요청공문서(전자, 비전자 불문)로 허용

- ※ 교원등이외와 같이 기관이 아닌 단체에서 요청받은 강의: 외부강의 (이 경우 강의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된 기관의 공·사립 여부 불문)

☑️ (청탁금지법) 이 선물을 받아도 되나?

